

서울중앙지방법원

제 21 민사부

판 결

사 건 2009가합109519 보험금  
원 고 1. 박○○  
화성시  
2. 박○○  
인천 서구  
3. 박○○  
4. 박○○  
원고 3, 4의 주소 부천시 원미구  
5. 박○○  
익산시  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민  
담당변호사 주상진, 임홍중, 이종훈, 김정덕, 박지혜  
피 고 ○○보험 주식회사  
서울 중구  
대표이사 지○○  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, 홍석한  
변 론 종 결 2009. 11. 9.

판 결 선 고

2009. 12. 3.

## 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망 박○○는 2008. 9. 4.경 피고와, 박○○ 소유의 ○○ 스타렉스 승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08. 9. 5.부터 2009. 9. 4.까지, 피보험자는 박○○, 납입보험료는 842,730 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[계약자 명의를 '○○(원조)'로 하였다. 이하 '이 사건 보험계약'이라 한다.]을 체결하면서, 「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」 담보에 가입하였다.

나. 박○○는 2009. 8. 14. 07: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○○ 다이너스티 승용차(이하 '이 사건 자동차'라 한다.)를 운전하여 37번 국도를 오가삼거리 방면에서 영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, 포천시 ○○면 오가리 ○○ 주유소 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경기 ○○ 차량과 충돌하여 같은 날 07:46경 위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(추정)

로 사망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보험사고'라 한다.).

다. 원고들은 망 박○○의 형제자매로서 그 상속인들이다.

라. 한편,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

이 특별약관(이하 '이 사건 약관'이라 한다.)은 보통약관 「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」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.

#### 1. 보상내용

(1)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'배상책임(대인배상 I 제외)' 및 '자기신체사고'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(2), (3) <생략>

<용어풀이>

이 사건 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.

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,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

② <생략>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# 2. 원고들 주장 및 판단

##### 가. 원고들 주장의 요지

원고들은, 박○○가 이 사건 약관을 통해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는 '다른 자동차'인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

발생하였으므로, 보험자인 피고는 박○○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박○○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을 보험금 200,000,000원을 원고들 상속 지분에 따라 계산한 각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#### 나. 판단

이 사건 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는 '다른 자동차'에서 제외되는 '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'는 피보험자동차와는 별개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 특약에 의한 담보 범위에서 제외한 것인데,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① 당해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당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(사용재량권의 유무), ② 피보험자가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상으로 당해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는지 여부(사용빈도), ③ 피보험자가 사용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 소유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포괄적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(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), ④ 당해 자동차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(사용목적의 제한 유무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관하여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다55491 판결 참조).

그런데 을 제2,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박○○는 2009. 8. 2.경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○○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다음, 같은 달 6.경 이○○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, 2009. 8. 14.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직장인 ○○에 두고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박○○는 2009. 8. 2.경부터 같은 달 14.까지 이○○로부터

구입한 이 사건 자동차를 상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이○  
○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자동차는 박○○  
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사건 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는 '다른  
자동차'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약관상의 '다른 자동차'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 
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보험금 지급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 
이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 판사      임성근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장정환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 정인영 \_\_\_\_\_